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원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 제외〉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99호)

2025. 2.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 · 문금주 · 홍기원 · 김한규 · 송옥주 · 김병기
김남근 · 오세희 · 김준혁 · 김동아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11. 22.

3. 회 부 일 : 2024. 11. 25.

※ 의안번호 : 579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 1인당 질의시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직후보자가 충분한 답변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생각, 견해, 해명 등을 청취하여 후보자를 사전 검증하는 자리임에도 질의시간 대부분을 위원들의 질의 또는 발언에 사용하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에 위원의 질의시간에서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을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이 공직후보자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의 1인당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공직후보자의 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검증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위원 1인당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② (생략)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후단 신설>	③ ----- ----- 이 경우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위원의 질의시간에 답변시간이 포함되는 반면,¹⁾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의의 경우에는 의원의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이 제외됨.²⁾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의 경우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의와 같이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1) 「국회법」 제60조(위원의 발언) ②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③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국회법」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 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22조의2를 준용한다.

것으로, 위원의 질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기여하고 공직후보자의 답변에 따라 위원들의 실제 질의시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본회의³⁾와 달리 위원회⁴⁾는 같은 의제에 대한 위원의 발언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로운 질의·토론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⁵⁾ 개정안과 같이 질의시간에 답변시간을 제외하는 경우 회의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회의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5

3) 「국회법」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위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 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위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22조의2를 준용한다.

4) 「국회법」 제60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議題)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5)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